

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

[양은숙 의원 대표발의]

의안 번호	2258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2. 27.

발의의원 : 양은숙 의원,
김보경 의원, 박주용 의원

1. 제안이유

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,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 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 설치·기능, 구성,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~7조)
- 라.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8조)
- 마. 교육 관련 재정지원 및 업무 위탁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9~10조)
- 바. 교육 추진 관련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관계법령 : 「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」제4·10조

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 사회 현안과 관련된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,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미디어”란 정보통신망 상에서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다른 이용자와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인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전송하는 모든 매체를 말한다.
2. “미디어 문해교육”이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,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“군수”라 한다)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) ①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미디어 문해교육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에 대한 사항
2.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
3.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미디어 문해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
2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추천한 사람
3. 학계, 언론계, 관련 전문기관,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문해교육 분야 전문가
4. 그 밖에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6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
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지원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·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
2.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
3. 미디어 문해교육 운영
4.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
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및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(업무의 위탁)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정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행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,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교육기관 및 관할 교육청, 시·군,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□ 「**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**(법률)」 [2021.9.24. 제정, 2022.3.25. 시행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[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청을 말한다. 이하 같다]는 원격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며 원격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따른 장애학생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래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생애주기별 디지털 역량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)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1.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
2.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
3.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
4.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·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